



제 43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습 자해공갈 방식의 보험사기에 대한 벌금형 배제〉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16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5. 19.

다. 회 부 일 : 2026. 5.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상습범 여부 또는 보험사기이득액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그 처벌 강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재판 실무상 피고인의 생활 곤궁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존재함. 자동차 사고를 통한 상습자해공갈 사건의 경우 단순한 보험금 편취를 넘어 고의적인 사고 유발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 보행자 등에까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도로 전체의 교통안전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단순한 재산 편취뿐 아니라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자해를 통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현행과 같음) ② 자해를 통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현행법 제8조는 보험사기죄¹⁾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되, 상습범 및 보험사기이득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제9조²⁾는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보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권유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협사기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³⁾는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

[표 1] 보험사기죄 법정형 및 가중처벌

구분		요건	법정형(가중처벌)
보험사기죄 (제8조)	(제1항)	·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	
상습범(제9조)		· 상습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자	보험사기죄 2분의 1까지 가중
보험이득액별 가중처벌(제11조)		·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가 ① 자해를 통하여, ② 사람을 공갈하는 방법으로, ③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 2)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4)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갈죄는 폭행·협박⁵⁾ 등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함⁶⁾.

-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 등에서 가해자가 자해를 통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공갈을 통해 피해자(운전자)로부터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이해됨⁷⁾.

○ 참고로, 보험사기죄의 상습범은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므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위와 같이 자해와 공갈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71억원, 적발인원은 105,743명으로,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소폭 증가⁸⁾하였으나 적발인원은 감소⁹⁾하였음.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여기서의 공갈의 수단으로서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6)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이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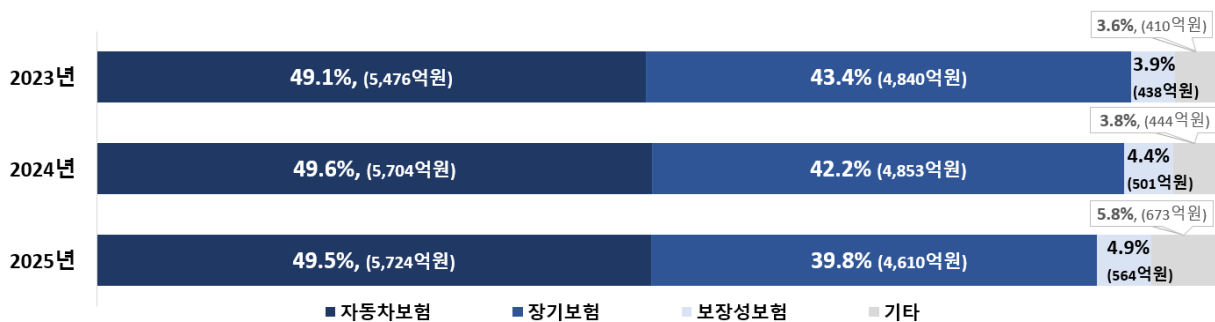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7) 개정안은 문언상 '자해를 통하여 사람을 공갈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기행위가 사람을 공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보험사기행위는 기망(사람을 속이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공갈(협박 또는 폭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공갈이 있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이해됨.

8) 2024년 1조 1,502억원 대비 69억원(0.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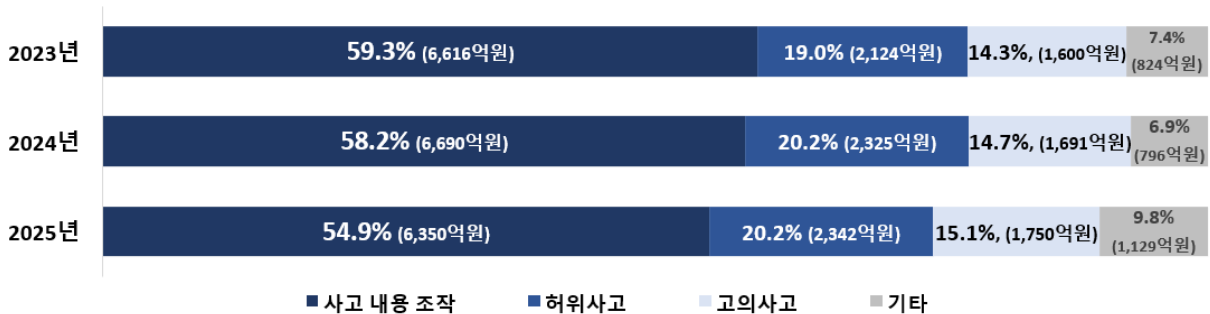
- 적발금액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보험 종목 중에서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이 49.5%(5,724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기유형별 중에서도 고의사고가 15.1%(1,750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보험사기 중에서 자해를 통하여 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행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음.

[그림 1] 보험종목별 적발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2026. 4. 1.

[그림 2] 사기유형별 적발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2026. 4. 1.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자해와 공갈의 요건을 갖춘 상습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배제하여 처벌을 강화할 경우 자해 공갈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2024년 108,997명 대비 3,254명(3.0%) 감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은 ▲상습적인 보험사기행위와 ▲자해를 통한 공갈의 요소를 모두 갖춘 경우에 벌금형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나, 서로 피해 대상과 범죄 방식이 상이한 두 종류의 범죄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험사기죄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공갈죄는 피해자(운전자 등)에게 폭행·협박 등의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이루어지므로, 각각 피해 대상(보험회사 또는 피해자)과 범죄 방식(기망 또는 폭행·협박)이 상이함.

- 참고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보험사기죄와 공갈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¹⁰⁾ 관계에 해당하게 되어 보험사기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¹¹⁾하게 됨.

○ 또한,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통한 공갈의 경우만 벌금형을 배제하고 있으나, 공갈의 방식이 아닌

10)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11)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기망의 방식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갈 범죄의 양태에 따라 형벌의 정도(징역형 또는 벌금형)를 판단하는 현행법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자해 요소가 있다고 하여 벌금형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의견이 제출되었음.

- 다만, 손해보험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해 공갈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함께, 보험사기죄와 공갈죄를 통합하여 하나의 범죄로 구성할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거나 형벌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6